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공 원 녹 지 과

구미시 맨발걷기길 조성 및 관리 조례안

발의연월일	2026. . .
발 의 자	이상호 의원

구미시 맨발걷기길 조성 및 관리 조례안

(이상호 의원 발의)

의 안 번 호	

발의연월일 : 2026. . .

발 의 자 : 이상호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김재우·김종화·김지식·김춘남
김현경·양진오·이정호·이정희
이탕모·전희정 의원(10명)

1. 제안이유

맨발걷기길의 체계적인 조성과 안전 및 위생에 대한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시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맨발걷기길의 조성(안 제4조)

나. 맨발걷기길의 관리(안 제5조)

다. 부대시설의 설치(안 제6조)

라. 관리부서의 지정・운영(안 제7조)

마. 관리의 위탁(안 제8조)

3. 조례안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

1) 「지방자치법」

2)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

나. 부서검토: 공원녹지과 의견제출(붙임)

다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 맨발걷기길 조성 및 관리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구미시 맨발걷기길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맨발걷기길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마련하고 시민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맨발걷기길”이란 맨발로 걷는 것이 가능한 길로서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맨발걷기길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맨발걷기길을 조성하거나 정비할 때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제4조(맨발걷기길의 조성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수 있다.

1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내 보행로
2. 산책로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
3. 그 밖에 시장이 맨발걷기길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

② 시장은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때 주변 자연환경 및 경관을 최대한

보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맨발걷기길의 노선 및 규모는 이용수요, 접근성, 토질, 배수상태, 주변시설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.

제5조(맨발걷기길의 관리) ① 시장은 맨발걷기길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.

1. 노면의 평탄성 및 적정한 토질 상태 유지
2. 돌, 유리조각, 나뭇가지 등 위험물 제거
3. 잡초 및 수목의 적정한 관리
4. 배수시설의 점검 및 정비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시장은 강우, 폭염, 동결 및 그 밖의 사유로 맨발걷기길의 이용에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6조(부대시설의 설치) 시장은 맨발걷기길의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1. 세족시설
2. 신발보관시설
3. 휴게시설
4. 안내 및 안전표지
5. 조명시설
6. 배수시설
7. 그 밖에 맨발걷기길의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설

제7조(관리부서의 지정・운영) 시장은 맨발걷기길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의 위치 및 성격(공원, 산림, 체육시설 등)에 따라 소관부서가 맨발걷기길의 조성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・운영할 수 있다.

제8조(관리의 위탁) ① 시장은 맨발걷기길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~ 3. (생 략)

4.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·관리

가. ~ 카. (생 략)

타.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, 녹지,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

파. ~ 더. (생 략)

5. ~ 7. (생 략)

□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~ 2. (생 략)

3. “도시공원”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·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 다만, 제3조, 제14조, 제15조,

제16조, 제16조의2, 제17조, 제19조, 제19조의2, 제19조의3, 제20조, 제21조, 제21조의2,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, 제39조, 제40조, 제42조, 제46조, 제48조의2,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외한다.

4. ~ 5. (생 략)

검 토 의 견 서

부서명 : 공원녹지과

조 례 명	구미시 맨발걷기길 조성 및 관리 조례안

□ 조례 제(개)정의 필요성 및 입법 취지 타당성

○ 맨발걷기길의 체계적인 조성 및 안전·위생관리 기준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, 위험물 제거, 세족시설 및 안내표지 등 부대시설 관리 규정을 정립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건강 증진에 기여

□ 관계법령 및 상위법령 저촉 여부

○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

○ 상위법령 저촉 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□ 기존 조례 및 유사 제도와의 중복·충돌 여부

○ 해당사항 없음

□ 조례 시행에 따른 행정적·재정적 영향

○ 기대효과

- 맨발걷기길의 안전 및 위생관리 기준 정립으로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
- 세족장 등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시민 이용 만족도 제고 및 건강 증진 도모

○ 소요예산

- 조례 제정에 따른 재정수반(비용 발생) 요인 없음

 * 기존 유지관리비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재정적 세출 순증가가 발생하지 아니함

○ 문 제 점 : 해당사항 없음

□ 조문별 수정·보완이 필요한 사항

○ 해당사항 없음